

제 2 편 헌 법

전 문

【100】 개신교 공통의 신학 전통과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이 미국감리교회의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 등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매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입국하여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운허 받았다. 그 후 미국감리교회는 1884년말 의사요 목사였던 스크랜턴과 그의 모친인 스크랜턴 대부인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장을 수여하였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와 5월 3일 스크랜턴(W. B. Scranton) 의사를 입국시켜 조선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리드(C. F. Reid) 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감리회 한국연회와 미남감리회 한국연회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례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2021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

제 1 장 총 칙

【101】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2】 제2조(명칭) 우리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The Korean Methodist Church)라 한다. 이하 ‘감리회’라 한다.

【103】 제3조(교리) 감리회의 기초 교리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적으로 믿는 복음주의 신앙에 기초한다. 이 교리는 존 웨슬리의 설교와 강론 그리고 찬양시집과 우리 교회의 신앙적 개요, 교리적 선언 및 신앙고백에 설명되어 있다.

【104】 제4조(사회신경)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감리회 교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신앙적 규범이다.

【105】 제5조(예배서) 감리회의 예배서(예문)는 입법의회에서 제정하고 이를 교회에서 시행한다.

【106】 제6조(기본체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

【107】 제7조(교구) 감리회는 대한민국을 교구로 하되, 대한민국 영토와 영토 밖에 연회와 지방회를 설치할 수 있다.

【108】 제8조(외국 감리회와의 협약) 감리회는 외국 감리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협약은 감리회 장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 장 회 원

제 1 절 교 인

【109】 제9조(교인의 정의)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감리회 회원이 되기를 결심하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다.

【110】 제10조(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11】 제11조(교인의 직분) 감리회의 교인은 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한다.

제 2 절 평신도 임원

【112】 제12조(평신도 임원의 정의) 평신도 임원은 개체교회에서 선교, 교육, 봉사, 교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이다.

【113】 제13조(평신도 임원의 구분)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제 3 절 사역자

【114】 제14조(사역자의 정의) 사역자는 개체교회에서 교인을 심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훈련되고 선택된 이다.

【115】 제15조(사역자의 구분)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제 4 절 교역자

【116】 제16조(교역자의 정의) 교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감리회로부터 특별히 세움 받은 이다.

【117】 제17조(교역자의 구분)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118】 제18조(회원의 자격 등)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 장 의 회

【119】 제19조(의회의 종류) 감리회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다섯 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120】 제20조(입법권) 감리회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② 본부운영에 대한 내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한다.

【121】 제21조(각 의회의 조직 및 소집절차) 감리회의 의회별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률로 정한다.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 제22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123】 제23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 5 장 감리회 본부

【124】 제24조(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 본부를 두고 감독회장이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률로 정한다.

제 6 장 재 판

【125】 제25조(심사·재판위원회)

①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징계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위원회를 둔다.

② 감리회 각 의회의 위법한 결의나 각 의회 의장의 위법·부당한 결정이나 행정처리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된 경우에 피해자나 의회구성원이 의회의 결의의 취소, 무효확인이나 의회의 장의 결정 및 행정 처리의 취소, 무효확인, 의무이행을 구하여 제소한 행정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위원회를 둔다.

③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종류, 조직과 직무 등은 법률로 정한다.

【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제 7 장 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

【127】 제27조(소속법인) 다음 각 항의 법인은 감리회에 속한다.

- 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 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 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 ⑥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 ⑦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 ⑧ 학교법인 삼일학원
- ⑨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 ⑪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 ⑫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128】 제28조(재산관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27조(소속법인)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1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 ② 제27조의 소속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관리하되, 부동산의 매매,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한다.
-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감리회가 설립할 법인은 정관 제1조에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관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감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⑥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는 임기 중에 부정이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불법적인 결의를 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진다.

【129】 제29조(재산관리에 관한 법률) 감리회 소유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30】 제30조(이사파송)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재산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도 감리회의 파송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선거관리

【131】 제31조(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 ①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서 정한다.

제 9 장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132】 제32조(발의권) 헌법과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 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④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을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⑤ 평신도단체 및 총회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 장정개정위원회에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133】 제33조(입법절차)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34】 제34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법률 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35】 제35조(의결 및 공포)

- ① 입법의회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②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법률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25일 이내에 공포한다. 감독회장이 그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일 경과 후 자동발효 된다.

제 10 장 보 칙

【136】 제36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 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도서출판kmc,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
-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37】 제37조(역사와 교리의 제정과 개정) 제1편 역사와 교리의 개정은 감독회장이 3개 신학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역사신학자 3명과 총회 역사보존위원회와 협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다.

부 칙 (1997. 10. 30)

【138】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9】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헌법 시행 당시 본 감리회가 외국 감리회 등과 체결한 협약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된 각 의회 대표와 위원, 감리회 본부 총무, 원장, 실장, 직원, 각 국 및 원 위원, 이사, 감사, 총회 실행부위원, 각 기관 파송 이사 그리고 연회 총무 등은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 재임한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기구 기타 규정 중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 또는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중략

부 칙 (2021. 10. 27)

【148】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1 장 총 칙

【201】 제1조(목적) 감리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감리회의 기본 조직을 밝히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 회

【202】 제2조(교회의 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례를 행하며,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신앙공동체이다.

【203】 제3조(교회의 직무) 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다.

② 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다.

③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④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⑤ 절제와 금욕, 선행 등 개인과 사회를 성화시키는 삶을 훈련한다.

【204】 제4조(교회의 설립 등) 교회의 설립, 분립,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 절 개체교회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항과 같다. <개정>

- ①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처소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 ② 개체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설립을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 설립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 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6】 제6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구역회에서 처리한다.
- ② 개체교회가 제1항에 따라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분립 또는 통합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의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 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7】 제7조(개체교회의 폐쇄)

- ① 개체교회의 폐쇄는 구역회의 결의에 따라 담임자가 지방회 감리사에게 보고하면 당해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감리사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 ②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체교회 폐쇄를 의결하면 지방회 감리사는 연회에 보고한다.
- ③ 제1항의 진행이 어려울 시 감리사는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회에 보고하고 연회 실행부위원회 회의를 거쳐 폐쇄한다.

제 2 절 교 인

【208】 제8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원입인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② 세례아동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거행한다.

③ 세례인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④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배서(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209】 제9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② 세례를 받는다.

③ 성찬식에 참례한다.

④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⑤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210】 제10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① 공중예배 : 공중예배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 순서는 예배서(예문)에서 정한다.

② 수요일예배 : 수요일예배는 교인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③ 속회 : 속회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조직되며, 매주 금요일(또는 정한 요일) 속회원이 모여 예배, 성경연구, 친교를 도모하며, 속회원간 신앙의 증진과 사랑의 협력관계를 이루는 모임이다.

④ 기도회 : 기도회는 교인들의 건전한 영적 생활을 위하여 교회나 기도실에서 담임자 또는 담임자가 지명한 이의 인도로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다.

⑤ 가정예배 : 가정예배는 가족들이 매일 한 차례씩 모여 「하늘양식」이나 그 밖의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예배다.

⑥ 사경회 : 사경회는 연례적으로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총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수일간에 걸쳐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⑦ 부흥회 : 부흥회는 부흥강사를 초빙하여 심령부흥과 교회성장에 관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회 힘쓰며 은혜를 받는 특별 집회다.

【211】 제11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 ④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 ⑧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 ⑨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 ⑩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

【212】 제12조(교인의 권리)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 ② 입교인은 당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 3 절 집 사

【213】 제13조(집사의 자격) 개체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감리회에서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 ③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214】 제14조(집사의 선출) 집사는 제13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215】 제15조(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제 4 절 권 사

【216】 제16조(권사) 개체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217】 제17조(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권사는 입교인 1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개정>
- ② 입교인 수가 10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 ③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218】 제18조(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 ③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 ④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 ⑤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
- ⑥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권사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9】 제19조(권사의 선출과 임명) 권사의 선출과 임명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제18조(권사의 자격)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한다. 다만, 무흠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 ③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자가 교부한 이명증서가 이명해 가는 담임자에게 송부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220】 제20조(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 ②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 ③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 ④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제 5 절 장 로

【221】 제21조(장로) 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둔다. <개정>

- ①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개정>
- ②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 ③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22】 제22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인 이
- ② 기획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개정>
- ③ 개체교회에서 신천장로로 추천 받아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 ④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온 장로는 기획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 받아 이명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신설>

【223】 제23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장로안수를 받을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5년 이내에 수료한 이

②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224】 제24조(장로의 안수집례) 제23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의 자격을 취득한 이의 안수는 지방회에서 담임목사와 본인이 원하는 목사 또는 장로의 보좌로 감리사가 집례한다.

【225】 제25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③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④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 대표와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⑦ 직무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회에서 품행 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회 내의 교회에 파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도 소속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송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개정>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및 본인 또는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③ 장로가 건강상 이유 또는 직장의 인사이동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장로 파송의 유보를 담임자의 승낙을 얻어 감리사에게 청원한 경우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직무수행과 품행에 대하여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다만,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이명할 수 없다.

② 담임자가 정기 당회를 거쳐 서면으로 장로의 파송 유보를 요청한 경우 지방회 개회 시에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며, 지방회가 닫힌 후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장로의 교회 파송 여부를 심사하여 감리사가 파송 또는 유보할 수 있다.

③ 장로가 다른 지방회의 교회로 이명하려면 담임자 및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 지방회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만일 소속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명증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가 속한 지방회 감리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④ 동일 지방회 내에서의 이명은 소속교회 담임자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 담임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에게 파송을 요청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⑤ 감리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서 이명증서를 소지하고 이명해 온 장로는 감리회의 입교인이 된 후 6개월 이상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지방회에서 시행하는 이명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장로증서를 받은 후 장정에 준하여 파송한다.

⑥ 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지방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되 3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담임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상실 당시 속해 있던 당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을 감리사에게 요청하면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다만, 복권될 경우 상실 당시의 연금으로 복권되고 연한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228】 제28조(장로의 은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해연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229】 제29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230】 제30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2항, 제3항, 제4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외 대학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③ 감리회가 인준한 신학원에서 신학교육과정을 졸업한 이

④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은 이

【231】 제31조(심방전도사의 임면) 심방전도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232】 제32조(심방전도사의 직무) 심방전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심방과 전도를 한다.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233】 제33조(교육사의 자격) 교육사는 감리회에 입교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①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②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외 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234】 제34조(교육사의 임면) 교육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235】 제35조(교육사의 직무) 교육사는 담임목사의 지도아래 개체교회 교인의 교육과 신앙지도를 담당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기독교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 10 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

【251】 제51조(부서의 종류)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

- ① 선교부
- ② 교육부
- ③ 사회봉사부
- ④ 예배부
- ⑤ 문화부
- ⑥ 재무부
- ⑦ 관리부

【252】 제52조(선교부의 조직) 선교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선교부를 조직한다.
- ② 선교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 ③ 선교부는 속회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한다.
- ④ 교회의 실정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장을 둘 수 있다.

【253】 제53조(선교부의 직무) 선교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의 선교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선교활동을 전개한다.
- ② 담임자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 ③ 담임자의 지도하에 속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교회부흥을 도모한다.

【254】 제54조(속회의 조직과 직무) 교인들의 신앙훈련과 친교 및 교회의 봉사활동을 위하여 속회를 조직한다.

- ① 속회는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5~9세대로 조직한다.
- ② 속회는 인도자의 지도로 성경을 연구하며 예배 및 중보기도를 드린다.
- ③ 속회는 속장의 주선하에 교인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한다.
- ④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
- ⑤ 속회는 교회사업이나 속회활동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 ⑥ 속회는 속회원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생활개선을 위해 힘쓴다.

【255】 제55조(속장의 자격) 속장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임원으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 이
- ② 신앙이 돈독하고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256】 제56조(속장의 선출) 속장은 제55조(속장의 자격)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속장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257】 제57조(속장의 직무) 속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속회로 모이는 일시와 장소의 결정과 통지, 속회헌금 수합, 속회일지 작성 및 제출 등 속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하며 속회 인도자가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속장은 속회를 관리하고 매주 속회원의 변동사항 등 속회현황을 담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속장은 속회에서 수합된 속회헌금을 재무부에 납입한다.

⑤ 속장은 담당 속회의 현황을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258】 제58조(속회 인도자) 담임자는 속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지도를 할 속회 인도자를 임명한다.

【259】 제59조(교육부의 조직) 교육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교육부를 조직한다.

② 교육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260】 제60조(교육부의 직무) 교육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교육과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인들의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③ 교회학교의 조직, 교육정책, 교육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회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61】 제61조(사회봉사부의 조직) 사회봉사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사회봉사부를 조직한다.

② 사회봉사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262】 제62조(사회봉사부의 직무) 사회봉사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내외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263】 제63조(예배부의 조직) 예배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예배부를 조직한다.

② 예배부는 부장 1명과 총무 또는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264】 제64조(예배부의 직무) 예배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와 성례가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돕는다.

②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 안내 및 헌금과 강단위원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세운다.

③ 모든 예배의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

【265】 제65조(문화부의 조직) 문화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문화부를 조직한다.

② 문화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266】 제66조(문화부의 직무) 문화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문화 향상을 위하여 기획하며, 교회음악, 기독교문학, 예술, 체육활동 및 교인친교행사 등의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267】 제67조(재무부의 조직) 재무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인원을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택하여 재무부를 조직한다.

② 재무부는 부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내지 2명을 선출한다.

1. 재무부장은 재무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2. 서기는 재무부 부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회의 시마다 의결된 안건과 의결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과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회계는 부장의 결재하에 현금을 수합하여 예치하며, 수입지출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장부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268】 제68조(재무부의 직무) 재무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의 연간 수입지출 예산안과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한다.

② 확정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교인들에게 의무금을 부담케 하고 현금할 것을 청한다.

③ 교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한다.

④ 전임 교역자와 유급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⑤ 교역자의 주택을 마련한다.

⑥ 교역자의 퇴직금을 수합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한다.

⑦ 감리회 본부, 연회, 지방회의 해당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⑧ 교회에 소속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납기 내에 납부한다.

⑨ 임원회에 수입지출에 관한 재정 현황을 보고하고, 당회와 구역회에 연간 결산을 보고한다.

【269】 제69조(관리부의 조직) 관리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인원을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택하여 관리부를 조직한다.

② 관리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③ 서기는 관리부 부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회의 시마다 의결된 안건과 의결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장과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원의 명부에는 부원의 성명과 주소, 부원으로 피선된 연, 월, 일 그리고 퇴임한 연, 월, 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270】 제70조(관리부의 직무) 관리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특히 관리부는 교회 재산관리의 중책을 맡았으므로 그 직무수행은 정확한 문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① 교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목록에는 부동산, 동산의 구분(부동산의 경우 소재, 지목, 지적 포함), 재산취득경위, 취득일자, 취득가액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된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②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

③ 교회가 소유하거나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을 사용 목적에 따라 관리 보존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④ 교회 예배당, 부속 건물 그리고 교회비품을 수리하고 보존한다.

⑤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환매, 무상양여, 신축 또는 증개축, 철거, 훼손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⑥ 교회의 비품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관리부장은 교회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한 재산목록과 변동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상태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⑧ 교회에서 보존 관리 중에 있는 건물과 비품 중 특별히 관리해야 할 건물과 비품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본부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각각 보고한다.

【271】 제71조(감사의 선출) 교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감사 2명을 당회에서 선출한다.

【272】 제72조(감사의 자격) 감사는 교회 평신도 임원 중에서 피감 대상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273】 제7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교회의 회계와 문서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274】 제74조(자치기관 설치) 개체교회 안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등의 자치기관을 조직하여 담임자의 지도하에 선교, 봉사, 친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제 3 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393】 제193조(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평신도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평신도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그 신급대로 받는다. 다만, 권사와 안수집사는 신천권사로, 장로의 연급은 신천장로와 같다. <개정>

제 4 편 의회법

제 1 장 총 칙

【501】 제1조(목적) 감리회의 각급 의회의 조직, 직무, 의사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502】 제2조(의회의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를 둔다.

【503】 제3조(의장의 권한과 직무)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를 의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한다.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와 총회 및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 입법의회는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 및 이사가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시킬 수 있다. <개정>

④ 각 의회의 위원회나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전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505】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06】 제6조(의사규칙) 감리회 각 의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규칙은 법으로 정한다.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507】 제7조(당회) 개체교회에 등록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

【508】 제8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등록된 입교인 12명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09】 제9조(당회의 구성원) 당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해당 개체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

② 연회와 지방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교역자

【510】 제10조(당회의 구분) 당회는 정기 당회와 임시 당회로 구분한다.

【511】 제11조(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정기 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

② 임시 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개정>

③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개최일로부터 13일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당회 정회 시는 속회의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512】 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 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서리담임자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513】 제13조(당회 의장의 직무) 당회 의장은 당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의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514】 제14조(당회 서기 선출) 정기 당회에서 당회 서기 1명을 선출한다.

【515】 제15조(당회 서기의 직무) 당회 서기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당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교인명부와 세례식, 혼례식, 장례식 등의 거행기록을 작성 보존한다.

【516】 제16조(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된 입교인은 당회에서 선거권과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지 2년 미만인 이

②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이 중 장로를 제외한 입교인은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518】 제18조(의사 정족수) 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 회원의 수로 한다. 다만, 교회 분립과 통합을 위한 당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한다.

【519】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다만, 입교인 정리는 정기 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③ 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

④ 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⑥ 당회는 5세대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⑧ 당회는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당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개정>

⑨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⑪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⑫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520】 제20조(당회의 사무처리 순서) 당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회예배

② 서기선택

③ 회원점명

④ 교회 역사 및 입교인 명부정리

⑤ 보고접수(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임원, 각 부 부장, 교회학교장, 각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특별위원회, 당회 서기, 회계 및 감사)

⑥ 담임자 신년도 계획안 보고

⑦ 교회임원 선출

⑧ 신천집사, 신천권사 증서 수여

⑨ 그 밖의 사무처리

⑩ 폐회

【521】 제21조(사고당회의 처리)

① 당회가 제11조(당회의 소집) 제1항이 규정한 정기 당회 소집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당회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고당회로 지정된 개체교회의 당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제 2 절 임원회

【522】 제22조(임원회)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를 둔다.

【523】 제23조(임원회의 조직)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 회원으로 조직한다.

【524】 제24조(임원회의 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 ② 분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 접수
- ③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심의
- ④ 그 밖에 개체교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 심의

제 3 절 기획위원회

【525】 제25조(기획위원회)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526】 제26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 중 권사, 집사의 순으로 7명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한다.

【527】 제27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결의
- ②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 ③ 신천장로 천거
- ④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 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결의
- ⑥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제 3 장 구역회

제 1 절 구역회

【528】 제28조(구역회)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

【529】 제29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구성된다.

【530】 제30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 구역회와 임시 구역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 ② 임시 구역회는 담임자 또는 구역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 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역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도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연회 감독이 소집하고 일시와 장소는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531】 제31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①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 ② 장로, 권사, 속장
-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 ⑤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

【532】 제32조(구역회 의장)

- ①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 ② 감리사 유고 시, 또는 제30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제4항의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 ③ 제34조(구역회의 직무) 제6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위임할 수 없다.

【533】 제33조(구역회 서기) 구역회에 서기 1명을 두며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구역회 서기는 구역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담임자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한다.

【534】 제34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헌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 ④ 구역회는 구역회 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 ⑤ 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보상금 유지 관리,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 보상금 유지관리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 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 ⑩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535】 제35조(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개회예배

- ② 서기선택
- ③ 회원점명
- ④ 보고접수(서식대로 지면으로)
 - 1. 목사
 - 2. 전도사
 - 3. 교육사
 - 4. 심방전도사
 - 5. 장로
 - 6. 권사
 - 7. 속장
 - 8. 선교부장
 - 9. 교육부장
 - 10. 사회봉사부장
 - 11. 예배부장
 - 12. 문화부장
 - 13. 재무부장
 - 14. 관리부장
 - 15. 남선교회 회장
 - 16. 여선교회 회장
 - 17. 청장년선교회 회장
 - 18. 청년회 회장
 - 19. 교회학교 교장
 - 20. 당회 서기
- ⑤ 지방회 대표 선출
- ⑥ 예배당과 주택에 관한 사무처리
- ⑦ 구입, 매매, 임대차 또는 기증한 동산과 부동산의 사무처리
- ⑧ 감사보고
- ⑨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부담금 사문
- ⑩ 신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의결
- ⑪ 그 밖의 사무처리
- ⑫ 폐회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536】 제36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둔다.

【537】 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회 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회 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소속목사 및 수련목회자와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5항의 각 회장은 제외하고,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한다.

② 개척교회를 설립하거나 통합, 분립한 교회는 감리사가 임시 당회와 임시 구역회를 조직하며, 지방회에 파송할 해당 구역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지방회 대표로 구역 인사위원회를 조직하며 교역자의 인사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538】 제38조(구역 인사위원회 의장) 구역 인사위원회 의장은 감리사가 되며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① 심사하는 안건이 감리사 자신에 관한 문제일 경우

② 감리사의 유고로 감리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39】 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 서기) 구역 인사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서기는 구역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40】 제40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구역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일 이내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보서가 구역 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부담임자와 수련목회자의 인사 처리 및 기관 파송 교역자의 소속에 관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

⑤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⑥ 독립 구역이 아닌 교회담임자의 인사처리는 해당 교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감리사가 처리한다.

⑦ 교역자가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구역 인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회 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 다만, 재판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

【541】 제41조(인사처리절차)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조직과 행정법 제44조(담임자의 파송) 제4항에 따라 파송한다.

③ 부담임자와 수련목회자,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구역 인사위원장은 해당 구역 담임자 청빙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542】 제42조(의결 제척사유) 교역자는 자신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부 록 : 의사진행 규칙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회)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회한다.

1. 당회는 개회 일자를 13일 전에, 임원회는 6일 전에 후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개정>
2. 당회와 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② 각 의회의 의장은 공고된 개회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671】 제2조(산회)

① 공고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회할 수 없다.

③ 모든 회의가 끝났거나 회기가 끝난 후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672】 제3조(회의의 공개) 각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의 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장 발의·철회·변안

【673】 제4조(의안의 발의)

①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674】 제5조(동의)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재청 1명 이상으로 의제가 된다.

【675】 제6조(긴급동의) 회원의 안전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중인 안전을 보류하고 이 안전부터 심의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심의할 수 있다.

【676】 제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각 의회의 회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당해 의회 및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77】 제8조(변안)

① 변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상급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678】 제9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3 장 의사와 수정

【679】 제10조(안건심의) 각 의회 및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 발의 및 동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680】 제1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 4 장 발 언

【681】 제12조(발언의 허가)

① 회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 의장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682】 제1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회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회의가 속회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683】 제14조(규칙발언) 안건처리가 의사진행 규칙에 위반될 때에 회원이 요청하는 규칙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우선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684】 제1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를 넘어서는 안 되며,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85】 제16조(찬반 토론의 균형과 통지) 의장은 찬반 토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찬반 쌍방의 발언을 공평하게 허락한다.

① 토론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통지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686】 제17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687】 제1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89】 제20조(표결의 선포)

-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690】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③ 각 의회, 위원회, 이사회의 회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이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691】 제22조(표결방법)

- ①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헌법 개정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제외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⑤ 표결은 찬성부터 묻는다.

【692】 제23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693】 제24조(무기명투표 절차)

- ① 무기명투표 할 때에는 각 회원은 먼저 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무기명투표 할 때에는 의장은 투표위원으로 하여금 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694】 제25조(투표용지의 수)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회의록

【695】 제26조(회의록)

- ① 각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회원의 수 및 성명
 4. 예배에 관한 사항
 5. 부의안건과 그 내용
 6. 의장의 보고사항

7. 각종 보고서
 8. 발언요지
 9. 표결수
 10. 회원의 발언보충서
 11. 서면질문과 답변서
 1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의록에는 의장,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5 편 교회 경제법

제 1 장 총 칙

【80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인의 경제생활 방식과 감리회의 예산결산 회계제도, 고정자산 관리제도, 그 밖의 교회경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회재산 및 재정의 건전한 관리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해야 한다. 다만, 연회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 연회 본부 부담금 : 연회 본부 부담금은 각 연회별로 해당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자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연회 본부 부담금의 비율은 각 연회별로 정한다.

3.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각 지방회별로 해당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지방회 부담금의 비율은 각 지방회별로 정한다.

4.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2%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② 예산회계 원칙 : 예산회계의 원칙이라 함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지출 예산의 편성, 의결 절차, 감사 및 결산에 관한 일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개체교회, 감리회 본부 또는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에서 취득,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기타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일반회계 :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동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외에 통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일반적인 회계를 말한다.

【803】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감리회 본부를 비롯하여 연회, 지방회 및 개체교회와 감리회 소속 법인, 이에 준하는 단체, 기관 등에 적용한다.

【80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과 감리회에서 적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 및 소속 교역자, 평신도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체교회, 감리회 본부 및 감리회 소속 각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편입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부담금

【806】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 개체교회는 이 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의 규정에 의한 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및 은급 부담금을 신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고 구역회에서 의결 책정하여야 한다.

【807】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부담금을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고 그 결과를 지방회 감리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 부담금 : 본부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연회 본부 부담금 : 연회 본부 부담금은 연회 본부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지방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은급재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현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810】 제10조(예산의 구분)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 모든 기관, 단체는 일반적인 회계와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둔다.

① 일반회계 : 일반적인 경상경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과 그에 관한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예 : 건축비회계, 장학재단 등)

【811】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교역자의 생활비, 주택비, 복리후생비에 필요한 지출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

②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③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에 관한 지출예산을 수립한다.

④ 개체교회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⑤ 교회의 모든 현금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구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 재산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815】 제15조(예산안의 확정) 예산안은 다음 각 항의 의결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① 개체교회 : 개체교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구역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816】 제16조(회계감사)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는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가 각각 담당할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보고를 먼저 처리한 후에 결산보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817】 제17조(결산보고)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는 예산안 심의 기관에서 각각 결산을 심의하여 받아들인다.

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818】 제18조(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819】 제19조(유지재단 편입) 감리회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야 한다.

①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및 소속 기관, 단체 등에서 소유하는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후 보존, 관리한다. 다만, 미주자치연회의 경우 교단등록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10 편 과정법

제 1 장 집사과정

【1801】 제1조(집사과정) 신천집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약개요

② 구약개요

③ 감리교회의 역사

④ 집사의 직무

제 2 장 권사과정

【1802】 제2조(권사과정) 신천권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과정고시 과목

1. 신약(복음서)
2. 구약(오경) <개정>
3. 감리회 교리와 의회제도
4. 권사의 직무

② 지방회 사경회 6년급 전 과정을 수료한 이는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를 면제한다.

③ 타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안수집사는 권사로 받되 신천권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④ 과정고시는 담임자가 하되 과정고시위원을 선정하여 위임할 수도 있다.

⑤ 감리회 계통 신학대학교 혹은 신학대학원 및 연회 신학원 신학계열 졸업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를 면제한다.

제 3 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

【1803】 제3조(장로과정) 신천장로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천장로 고시과정

1. 신·구약 개론
2. 「교리와 장정」
3. 감리교회사
4. 설교학
5. 임원지침

② 이명장로 고시과정(감리회 인정 타 교파 출신)

1. 「교리와 장정」
2. 감리교회사
3. 감리교신학
4. 임원지침

③ 진급과정

- 1년급 : 1. 구약(역사서, 예언서)
2. 신약(복음서, 요한서신)
3. 기독교교육

- 2년급 : 1. 구약(지혜서<시가서>) <개정>
2. 신약(바울서신)
3. 웨슬리의 생애
4. 기독교원리(개론)

④ 연수과정 :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서 시행하며 각 호와 같다. <개정>

1. 제1과정 : 교회부흥을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 교리와 장정에 관하여 교육한다.
<개정>
2. 제2과정 : 교회성숙을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사회복지,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에 관련하여 교육한다.
3. 제3과정 : 신앙의 성숙과 은퇴를 위하여 성경, 노인, 인간관계에 관련하여 교육한다.
- ⑤ 지방회는 장로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이는 2년의 진급교육 및 과정고시를 5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 ⑥ 고시문제는 위원회에서 공동출제하여 지방회 과정고시위원회에 위임한다.
- ⑦ 감리회 계통 신학대학교 혹은 신학대학원 및 연회 신학원(4년제) 졸업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 과정 중 「교리와 장정」만 고시한다.

5. 교회학교 규정

제 1 장 목적과 조직

【2106】 제1조(목적) 기독교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교회마다 교회학교를 조직한다.

【2107】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 ① 영아부 1세~3세
- ② 유치부 4세~5세
- ③ 초등부 6세~11세
- ④ 중등부 12세~14세
- ⑤ 고등부 15세~17세
- ⑥ 대학부 18세~34세
- ⑦ 청년부 18세~34세
- ⑧ 청장년부 35세~47세
- ⑨ 장년부 48세~70세
- ⑩ 노년부 71세 이상

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제 2 장 직원과 직무

【2108】 제3조 교장 1명, 교감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 두고 각 부마다 부장 1명을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 서기, 회계를 둘 수 있다.

【2109】 제4조(직원의 직무)

- ① 교장은 당회에서 선출하고 교회학교 전반의 책임을 지며 교육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교회학교 각 부를 감독한다.
-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서기는 문서 일체를 장리한다.
- ④ 회계는 재정 일체를 장리한다.

⑤ 각 부의 부장은 그 부의 책임을 진다.

【2110】 제5조(직원의 자격 및 선정)

① 직원 자격

1. 교장은 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30세 이상된 자
2. 교감은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25세 이상된 자
3. 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사대학과정을 필하고 교육국 발행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4.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사대학과정을 필하고 교육국 발행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② 직원 선정

1. 교장은 당회에서 현직교사 중에서 선정한다.
2. 교감, 부장, 기타 직원은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2111】 제6조(직원의 임기 및 임명)

- ①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나 재선될 수 있다.
- ② 담임자는 매년 교회학교 직원 취임 예배를 드리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 3 장 관 리

【2112】 제7조 학기 연도는 교육부 기준연도에 준한다.

【2113】 제8조(교재) 감리회 본부 교육국이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14】 제9조(재정) 교회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및 특별희사금으로 충당한다.

【2115】 제10조 교사교육 확충을 위해 교육국이나 각 지방회에서 집중 단기간 교육 및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주관한다. <개정>

【2116】 제11조 교사대학을 설치한다. 교사대학의 교과과정은 교육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117】 제12조 세례 후보자를 위하여 교인 양성반을 설치한다.

【2118】 제13조 교육국 총무가 발행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정교사로 한다. 다만,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30)

【211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회의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1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회의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2. 교회 청년회 규정

제 1 장 이름과 목적

【2380】 제1조 이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년회라 한다.(영문약칭 M.Y.F.)

【2381】 제2조 이회는 ○○교회 안에 있다.

【2382】 제3조 이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383】 제4조 이회는 연령별로 다음 세 부회를 두어 각각 개별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

① 중등부회 12세~14세

② 고등부회 15세~17세

③ 청년부회 18세~34세

다만, 교회 형편에 따라 중등부회와 고등부회, 고등부회와 청년부회를 합할 수도 있다.

【2384】 제5조 이회 회원은 제2장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각 부회 월례회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다.

【2385】 제6조 이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 :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고등부회 회장은 세례인, 청년부회 회장은 입교인이어야 하며, 모든 임원은 가급적 학습인 이상으로 한다.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등이다.

제 3 장 임 원

【2386】 제7조 이회 각 부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① 중등부회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② 고등부회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③ 청년부회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2387】 제8조 이회 각 부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 : 각 부회를 대표하여 일체 회무를 주관한다.

다만, 청년부회 회장은 구역회 회원이 되며 MYF의 대표가 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 : 각 부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④ 회계 : 각 부회의 금전 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⑤ 부장 : 각 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388】 제9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은 각 부회 정기 총회에 무기명투표로 선정한다.
다만, 임기는 가급적 1기로 한다.

【2389】 제10조 이 회 각 부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① 중등부회 6개월간

② 고등부회 6개월간

③ 청년부회 1년간

【2390】 제11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각 부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각 부회 월례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부 서

【2391】 제12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부서를 두어 직무를 분담케 한다.

① 중등부회는 부서를 두지 않는다.

② 고등부회

1. 신앙, 선교부 -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키우며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2. 사회, 친교부 -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적 평화를 이룩한다.

3. 문화, 공보부 - 문화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새로운 표현을 찾으며 대회 교섭 및 출판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의 승인 아래 부서를 증설할 수도 있다.

③ 청년부회는 위의 고등부와 같다.

제 5 장 위원회

【2392】 제13조 이 회 각 부회에서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둔다.

① 중등부 - 단기 위원회를 둔다.

1. 조직 - 중등부회 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직무 -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준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반성, 실천케 한다.

② 고등부회 - 계획위원회를 둔다.

1. 조직 - 사업 해당 부서 부장과 고문을 포함한 임원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2. 직무 -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준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반성, 실천케 한다.

③ 청년부회 - 위의 고등부와 같다.

제 6 장 고 문

【2393】 제14조 이 회의 각 부회는 사업지도와 협조를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다만, 모든 고문들은 때를 따라 담임목사 지도하에 모여 지도 방침을 검토하고 상호 간에 통일된 지도 방법을 세우고 이의 실천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제 7 장 집 회

【2394】 제15조 이 회의 집회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 총회

1. 중등부회 - 1년에 2회
2. 고등부회 - 1년에 2회
3. 청년부회 - 1년에 1회

② 월례회 - 각 부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③ 임원회 - 회무에 따라 소집한다.

④ 임시 총회 - 각 부회 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의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395】 제16조 총회의 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8 장 각 집회의 직무

【2396】 제17조 제7장 제15조의 모든 집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정기 총회 - 임원개선, 각부 보고, 결산 보고, 예산통과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월례회 -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원회 - 회무 진행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맡긴다.

제 9 장 재 정

【2397】 제18조 이 회의 재정은 교회 지원금과 회비, 헌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0 장 연 락

【2398】 제19조 이 회의는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중등부회는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제 11 장 보 칙

【2399】 제20조 사업 진행상 이 회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담임목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400】 제21조 회원으로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401】 제22조 본 회의 규정 개정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회의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30.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40】 제1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남선교회(이하 '본회')라 한다.

【2541】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2542】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543】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44】 제5조(조직) 연령층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남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장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2545】 제6조(회원) 본회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2546】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다만, 본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 3 장 임 원

【2547】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1명
- ③ 총무 1명
- ④ 서기 2명(정·부)
- ⑤ 회계 2명(정·부)
- ⑥ 부장, 차장 각 1명
- ⑦ 감사 2명

【2548】 제9조(고문)

- ① 본회는 본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 총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549】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회무를 총괄한다.
- ④ 서기 : 서기는 본회의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 ⑤ 회계 :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 ⑥ 부장 : 부장은 그 부의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 ⑦ 감사 : 감사는 본회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550】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2551】 제12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부 서

【2552】 제13조(부서)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식개발과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 ④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친목 또는 이웃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⑤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지도한다.
- ⑥ 연합사업부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간의 연합사업과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설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2553】 제14조(종류) 본회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2554】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석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소집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 2. 임원 선출
- 3. 대의원 선출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 6. 기타 중요한 사항

【2555】 제16조(월례회)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556】 제17조(임원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되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한다.

【2557】 제18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2558】 제19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59】 제20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560】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7 장 시행세칙 및 연락

【2561】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562】 제23조(연락)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보 칙

【2563】 제24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회의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2564】 제25조(보고) 본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안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 및 지방회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256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회의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566】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34. 교회 여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659】 제1조(이름)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여선교회라 한다.

【2660】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신설>

【2661】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교회를 도우며 회원 교육과 친교를 통해 지방회, 연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개정>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62】 제4조(조직) <개정>

① 여성 성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여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교회 여건에 따라 연령, 직능,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지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회 이름을 ○○○여선교회로 정할 수 있다. <신설>

③ 둘 이상의 지회가 조직될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총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신설>

【2663】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한다. <개정>

【2664】 제6조(회원의 의무)

① 월례회 및 기타 여선교회 집회에 참석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를 납부한다. <개정>

③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신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④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지회는 교회 총여선교회에, 교회 총여선교회는 지방회에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신설>

제 3 장 회 의

【2665】 제7조(종류) 본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월례회

③ 총회 <개정>

【2666】 제8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로 구성하며, 회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개정>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신설>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2667】 제9조(월례회)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사업보고, 회비납부 및 기타사업을 처리한다. <개정>

【2668】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 11월 중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총회를 마친 후 총여선교회 총회를 개최한다. 직전총회장은 당연직으로 총회 대표가 된다. <개정>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개정>

③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 결산안 심의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2669】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명칭 앞에 ‘총’이란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예: 총여선교회, 총회장) 지회 회장단이라 함은 지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정), 회계(정)를 말한다. <개정>

【2670】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정>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신설>

④ 임원 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신설>

【2671】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신설>

【2672】 제14조(임원 입후보자의 자격) <개정>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여야 한다.

- ② 여선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여야 한다.
 - ③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만 70세 이상이 모이는 지회는 예외로 한다.) <신설>
 -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신설>
- 【2673】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 월례회 등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부 서

- 【2674】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 ③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등지 운영 협조 및 지역봉사에 힘쓴다.
 -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⑥ 청소년지도부 : 청소년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감사 및 자문

- 【2675】 제17조(자문)** 교회의 담임목사와 여교역자를 자문으로 추대한다.
- 【2676】 제18조(감사)**
-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회장)는 감사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 ② 감사는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개정>

제 7 장 선 거

【2677】 제19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 당회 전에 실시한다.

【2678】 제20조(선거방법)

- ①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감사 및 임원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 ② 회장선거에 있어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레까지 투표를 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 ③ 총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의 선출은 총여선교회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지회의 회장단이 총대가 된다. <신설>

제 8 장 재 정

【2679】 제21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월례회비와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 지방회 부담금 및 사업비는 매 계삭회 시 지방회 여선교회에 납부한다. <개정>
- ②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 ③ 총여선교회는 지회에 부담금을 분담하며, 지회는 부가된 부담금을 분기별로 총여선교회에 납부한다. 다만, 지회의 부담금 액수는 총여선교회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 ④ 본 회의 회계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제 9 장 보 칙

【2680】 제22조(보고) 본 회의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681】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신설>

【2682】 제24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683】 제25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회의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684】 제26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7)

【268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회의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462】 제1조(이름) 이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장년선교회라 한다.(약칭 M.Y.A.F.)

【2463】 제2조(사무소) 이회는 ○○교회 안에 둔다.

【2464】 제3조(목적) 이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65】 제4조(조직) 이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2466】 제5조(권리와 의무) 이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 ① 권리 :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제 3 장 임 원

【2467】 제6조(임원) 이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2468】 제7조(임원의 직무) 이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 :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주관한다.
- ② 기획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 ③ 기타부회장 :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④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 : 이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 : 이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 : 이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각부 부장 :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469】 제8조(임원 임기 및 보선)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
- ② 이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470】 제9조(고문 지도위원) 이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5471】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⑥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5472】 제11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 ① 정기 총회 :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소집하되 임원개선, 각부 보고, 예산통과, 규칙개정 및 기타사무를 처리한다.
-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제 6 장 재 정

【2473】 제12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보 칙

【2474】 제13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회의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준한다.

【2475】 제14조(연락) 이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476】 제15조(제적) 회원으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30)

【24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